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 발의일자: 2023. 9. 1.(금)
- 회부일자: 2023. 9. 1.(금)
- 검토기간: 2023. 9. 4.(월) ~ 9. 8.(금)

2. 제안이유

-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 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월배체육 공원 내 체육시설	월배국민 체육센터	갈밭남로 76 (도원동)	지상 2층, 연면적 2,580.12㎡	다목적체육관, 다용도강좌실, 체력인증센터, 사무실 등
	월배축구장	도원동 1473	6,400㎡	100m×64m, 인조잔디 (풋살장 4면, 육상트랙 350m 포함)
	월배테니스장		1,925㎡	3면, 아크릴포장 (순환산책로 250m 포함)
송현체육센터		월배로72 길 26 (송현동)	지상 2층, 연면적 801.59㎡	다용도강좌실, 탁구장 등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송현체육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기타 구청장이 체육시설 사용 및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2024. 1. 1.~2026. 12. 31)

※ 현 위탁기관 : (사)달서스포츠클럽, (사)달서송현스포츠클럽

○ 수탁자 선정방식: 기존 수탁업체 적격심사 후 계약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모집

4.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제7조까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의 민간위탁의 만료일(2023년 12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다시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충족시키고, 후원금·자체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해 운영비용 부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고
-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인 월배국민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체력인증센터 등), 월배축구장(풋살장·육상트랙 등), 월배테니스장과 송현체육센터(다용도강좌실·탁구장 등, 지상2층 연면적 801.59㎡)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음.
- 또한 4개 부문 15개 지표를 통한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월배체육공원¹⁾은 93점(배점 100점)으로 사업운영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송현체육센터²⁾ 82점(배점 100점)으로 사업운영 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나 취약계층에 대한 스포츠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음.

1) 2022년 안전사고 5건, 2023년 안전사고 1건이 발생했으며 각각 보험접수 및 보험처리 완료
2) 2022년 시설이용 회원 수는 5,760명(월 평균 480명)이었으나 실적은 3,455명, 2023년 6,180명(월 평균 515명)이었으나 7월까지 2,333명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재계약의 절차는 각각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 후 70점 이상일 경우 현 수탁자와 계약을 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는 시설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선정절차 및 위탁기간 등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

탁 조례」에 따르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생활체육 활성화·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